

원천징수하지 않은 소득명세서

접수번호		접수일시	
원천징수의무자 (금융회사등)	① 금융회사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 주소(본점소재지)	④ 전화번호	

원천징수하지 않은 소득명세

(단위: 원)

⑤ 주민 등록번호	⑥ 성명	⑦ 계좌 번호	⑧ 금융투자소득 상세구분	⑨ 장내/ 장외	⑩ 국내/ 국외	⑪ 증권 표준코드	⑫ 금융투자 상품명 (종목명)	⑬ 수입시기 (양도일자)	⑭ 양도 등 수량	⑮ 양도 등 가액	⑯ 원천징수 제외사유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의2제16항 또는 제203조의4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하지 않은 소득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1. 원천징수 제외통지 내역 2. 원천징수배제신청서(영 제203조의4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 첨부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작성방법

이 서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의2제14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계좌보유자에게 원천징수 제외를 통지하였거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의4제2항에 따라 계좌보유자로부터 원천징수배제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출 시 원천징수대상 소득 중 원천징수하지 않은 소득 명세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서식입니다.

- ①~④란: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금융회사등의 해당 사항을 적습니다.
- ⑤ 주민등록번호 및 ⑥ 성명란: 원천징수하지 않은 소득의 소득자(계좌보유자)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 ⑦ 계좌번호란: 원천징수하지 않은 소득이 발생한 거래 계좌번호를 적습니다.
- ⑧ 금융투자소득 상세구분란: 「소득세법」 제87조의6제1항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을 구분하되 다음과 같이 해당되는 상세코드를 적습니다.

구분	주식등(10)						채권등(20)						투자 계약 증권	집합투자기구 (40)		파생결합증권(50)										파생상품(60)					
	상장			비상장			국 채	지 방 채	특 수 채	회 사 채	외 국 채	기 타		공모 국내 주식형 적격집합 투자기구	그 외	E L W	E L S	D L S	E T N	골드 뱅킹	실버 뱅킹	기 타	선 물	선 도	스 왑	콜 옵션	풋 옵션	C F D	기 타		
																														K-OTC 거래	
	코스 피	코스 닥	코 넥 스	중소·중견기업	그외																										
코드	11	12	13	14	15	19	21	22	23	24	25	29	30	41	49	51	52	53	54	55	56	59	61	62	63	64	65	66	69		

- ⑨ 장내/장외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 내에서 양도한 경우 코드 “01”로 적고, 장외거래 중 「상법」 제360조의2 및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또는 같은 법 제360조의5 및 제360조의2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을 장외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03”으로, 그 외의 장외거래는 “02”로 적습니다.

구분	장내거래	장외거래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또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그 외
코드	01	03	02

- ⑩ 국내/국외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9조의2에 따른 국외 금융투자소득이 발생하는 증권 또는 파생상품인 경우 코드 “9”로 적고 그 외는 “1”로 적습니다.

구분	국내	국외
코드	1	9

- ⑪ 증권표준코드란: 한국거래소(비상장 집합투자기구인 경우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부여하는 금융투자상품의 종목코드를 적습니다(표준코드12자리). 종목코드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증권등 발행법인의 사업자번호를 적습니다.

※ 국외증권의 경우 국제증권식별번호(ISIN코드)를 적으며 동 번호가 부여되지 않은 경우 발행법인 소재의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 ⑫ 금융투자상품명(종목명)란: 금융투자소득 과세대상 금융투자상품의 상품명(종목명)을 적습니다. 상품명 확인되지 않는 경우 증권등을 발행한 법인의 법인명을 적습니다.

- ⑬ 수입시기(양도일자)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0조의8에 따른 금융투자소득의 수입시기(주식등의 경우 양도일자)를 적습니다.

- ⑭ 양도 등 수량란: 양도한 금융투자상품의 수량(주수, 좌수 등)을 적습니다.

- ⑮ 양도 등 가액란: 양도(환매·분배등을 포함)한 금융투자소득의 구분에 따라 다음의 금액을 적습니다.

- 주식등, 채권등, 투자계약증권소득: 해당 증권 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의 총수입금액
- 집합투자기구소득: 집합투자증권 환매등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
- 파생결합증권소득: 파생결합증권으로부터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의 총액
- 파생상품소득: 「소득세법」 제87조의16에 따른 파생상품소득금액

- ⑯ 원천징수 제외사유란: 원천징수하지 않은 사유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의2제14항에 따라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등의 사유로 금융회사가 원천징수 제외통지를 하였으면 “01”로 적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3조의4제2항에 따라 비과세금융투자소득금액에 해당되어 계좌보유자가 원천징수 배제신청을 하였으면 “02”로 각각 구분하여 적습니다.

구분	원천징수 제외통지	원천징수 배제신청
코드	01	02